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48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로 서울시 견인 업무의 원활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세분화하여 견인료 차등 적용(별표)

- 승용·승합자동차는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이륜자동차는 경형자동차와 동일하게 견인료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6. 8. 26. ~ 9. 14.) 결과: 의견 없음
- (2)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견인에 대해 견인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 인 료	보 관 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다만,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8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30분당 1,200원, 다만,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소요비용 산정기준</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구분 피견인 차량의중량</th>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견인료</th> <th style="width: 60%; text-align: center;">보관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d>30분당 700원, 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이상 6.5톤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6,000원</td> <td>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톤이상 10톤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6,000원</td> <td>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톤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15,000원</td> <td>50만원을 한도로 한다.</td> </tr> </tbody> </table>			구분 피견인 차량의중량	견인료	보관료	2.5톤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2.5톤이상 6.5톤미만	46,000원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6.5톤이상 10톤미만	66,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10톤이상	115,000원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견인료</th> <th style="width: 60%; text-align: center;">보관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승용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승합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형, 대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이륜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 이상 65톤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톤 이상 10톤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톤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00원</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p>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8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구분 피견인 차량의중량	견인료	보관료																																																			
2.5톤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2.5톤이상 6.5톤미만	46,000원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6.5톤이상 10톤미만	66,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10톤이상	115,000원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8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견인료는 피견인차량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나 구 차원의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견인료는 피견인차량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견인료 인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총 비용(견인료)는 견인단속 건수에 비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이원창(02-2133-2353)